

자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도 임
기중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조
치한다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충분한 토의와 심의가 있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둘째, 제12조제3항 “회의는 연10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한국교육개발
원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의회('96.7.26)시 지역교육장들
의 의견제기와 또한 서울시 교육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나타
난 의견들에 따를 것 같으면 연간 운영위
원회 개최회수는 평균 3.8회로서 연 10회
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며, 각 시·도의 조례중 회수를 규정하는
곳은 대전교육청에서 연 6회 이상 개최한
다 하였고 서울을 제외한 여타 시·도 교육
청에서는 회수에 관한 규정이 전무함니
다.

이와 같이 지키지도 못할 규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행정
사무감사자료와 개선방안 협의회시 제기
된 바와 같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
의 회수는 학사운영에 따른 융통성을 확
보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회의일수를 완화
하여 관계법규 준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하
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서울 도심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
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된 보통교과과정
학원과 고시학원을 도심 중심 5킬로미터내
에서는 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
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수도권정비

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98.2.20, 대
통령령 제15650호) 위의 조례로 제한한 도
심지 학원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며, 우리 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권고
에 따라 학원설립을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
일교습과정 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법규에
명시되지 않아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사례
가 발생하여 민원이 빈발하므로 교습시간사
이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여 학습자를 보호
하며,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현실에 맞는 개정
요청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학원 본래
기능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입니
다.

2. 주요골자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사문하
되어 불필요한 현행 제4조제1항의 도로원
표 중심 반지름 5킬로미터 내에서는 보통
교과 및 성인고시학원의 신설 및 증원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 현행 제4조제2항에서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과
신고를 금지한 동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
지 않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우리 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설립을 허용하도
록 권고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
다.

다. 학원운영에 있어 법령 등에 교습시간 사이
휴식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
강료를 초과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
원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부제내
각단위 교습시간 사이 적정한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고,

라. 법령으로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로 위
탁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원
활하게 하고자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학
원장 및 강사명단을 반기별로 한국학원총
연합회로 통보하도록 하고

마.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생활편익시설
내 설립이 가능한 학원으로 보습학원이
명시되지 않아(제2조제2항마목 : 예능·가
정·사무·어학 및 컴퓨터 학원만 가능) 주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330
제곱미터의 범위내에서 설립을 할 수 있
도록 지침으로 정했던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바. 조례로 규정한 설립·설습·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학원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습과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고, 법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도·감독권을 위탁한 자동차학원에 대한 시설·설비교구기준을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 기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98. 7.10.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8. 7.1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98. 2.20 대통령령 제15650호)에 따라 조례로 제한한 도심지 보통교과 및 성인고시 학원 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학원설립을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을 허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자동차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정비 등 학원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원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임.

3. 주요골자

- 도로원표 중심 반지름 5km내에서 보통교과 및 정원증원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건물내 동일 교습과정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
- 부세내 각 단위 교습시간 사이에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할 교육장은 등록된 학원 및 강사명단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반기별로 통보하도록 함.
- 또한 생활 편의시설내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를 330㎡ 이내로 규정하고 [별표1], 설립·설습·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별

표1]의 교습과정에 일치시키고, [별표2]의 자동차 운전학원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4.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교육위원회는 '98. 5. 6일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영수와 7인)의 심의를 통해 동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을 교습소와 학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5조제3항으로 신설한 "유아에 대한 1일 총 교습시간은 180분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의 2(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관할 교육장은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위하여 등록된 학원 및 강사의 명단을 반기별로 연합회에 통보한다를 신설함. 또한 부칙 제1항중 "공포후 2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수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음.

5. 검토의견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98. 2.20 대통령령 제15650호)에 따라 조례로 제한한 도심지 보통교과 및 성인고시 학원 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학원 설립을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일 교습과정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을 허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자동차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정비 등 학원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원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각 개정 조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4조제1항을 보통교과학원 및 고시학원을 인구집중유발 시설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원표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98. 2.20)시 근거 규정인 제3조제5호 나목이 삭제되어 동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동일 건물내에서는 동일 교습과정